

신학대학원 장학금 운영규정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근거 및 목적) 본 장학금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은 장학업무의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적용) 본 시행세칙은 등록횟수가 6회(학기)이내인 신학대학원 소속의 재학생에게 적용한다. 개정(2016.12.14.)

제3조(장학금의 구분) 장학금은 교내장학금(등록금, 기금)과 교외장학금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1. 교내장학금중 등록금은 학생의 등록금으로 책정된 예산 중 장학금 용도로 쓰는 경비를 말한다. 기금은 기금으로 적립된 재원에서 장학금 용도로 쓰는 경비를 말한다.
2. 교외장학금은 교육부와 기타 국고에서 지원되어 쓰는 경비와 외부에서 학교에 장학금으로 기탁한 금액을 말한다.

제4조(교내장학금) 교내장학금(등록금)의 종류와 내역은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5조(교외장학금) 교외장학금중 기탁장학금은 기탁자의 취지와 방법에 따른다.

제6조(장학금 지급 방법) 장학금 지급은 해당학기 등록금 수납 시 납입금의 일부 수납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장학금의 수혜 여부가 등록금 수납 기간 이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7조(장학금 지급의 제한) ① 모든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해서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2016.12.14.)

② 교내 장학금이 중복될 경우에는 금액이 높은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금액이 동일할 경우에는 어려운 장학생 장학금으로 우선 지급한다. 개정(2016.12.14.)

③ 이중 수혜 또는 3개 이상의 장학금 수혜 경우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지급한다. 다만, 기 수혜자 중 근로장학금, 생활비(생활비 보조) 명목의 장학금, 도서지원 장학금, 기숙사 지원 장학금, 봉사장학금, 1회성 포상성격의 장학금, 학업장려비 성격 장학금, 대가성 장학금 경우에는 이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개정(2016.12.14.)

제8조(장학금 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학기에는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학칙 및 제 규정을 위반한 자
2. 소정 기간 내 장학금 신청서(소정양식)를 제출하지 않은 자
3. 이전학기 근로성적이 불량하다고 판단된 자(근로장학금에 한한다)
4. 기타 장학금 지급이 불가한 자
5. 휴학이나 제적된 자 신설(2016.12.14.)

제9조(장학금 수혜 유효기간) 장학생으로서의 유효기간은 당해 학기에 한한다.

제10조(개정) 본 시행세칙의 개정은 장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부 칙

본 시행세칙은 2001년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세칙은 2003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세칙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세칙은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세칙은 2014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세칙은 2016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